

12. 不動產登記法中 改正法律

法律 第5,205號 1996. 12. 30

주 요 골 자

- 가.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므로, 지원장이 등기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함(법 제12조).
- 나. 종래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부속서류만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함(법 제21조 제1항).
- 다.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가 미 납된 경우를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함(법 제27조 제3항 및 제55조 제9호).
- 라. 등기신청시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(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한다)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함(법 제28조 단서).
- 마.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·임야대장·건축물대장의 등 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(법 제40조 제1항 제8 호).
- 바.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여받 아야 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종래 부동산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만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전산망이 완비됨에 따라 그밖의 시장 또는 군수 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(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).
- 사.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(법 제72조).
- 아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함(법 제4장의

2).

- (1)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,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77조의 3).
- (2)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의 송부 및 대장소관청에 대한 등기필 통지를 일정한 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77조의 5).
- (3)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보관·관리 및 기타 등기사무처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법 제177조의 6).

개정이유

등기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하며, 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등기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여 감독권과 지정권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